

해양수산부령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기 관 명 (부 서 명)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연 월 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정이유

해양조사와 그 조사를 통하여 얻은 해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로조사 관련 내용을 해당 법률에서 분리하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63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해양조사의 절차 및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설치·관리 등(안 제4조, 제5조, 제6조, 별표 2)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형상 및 규격을 정의하고 변동, 멸실, 훼손 등의 상태 파악과 관리를 위한 사항 및 표지의 이전신청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해양기준점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나. 해양조사의 표준화 기준(안 제8조, 별표3)

해양조사의 표준화를 위한 해양조사기준을 정하고, 해양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해양조사 업무 수행방식에서 표준화 기준을 정함

다. 국가해양관측망의 출입절차(안 제9조)

국가해양관측망에 출입하는 절차를 정의하고 출입허가에 대한 출입허가서를 발급함으로써 무단으로 국가해양관측망에 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해양관측망을 보호함

라. 일반수로측량의 종류별 항목(안 제13조)

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작한 항해용 간행물의 내용을 변경하게하는 공사에서 실시해야하는 일반수로측량의 항목을 정하여 일반수로측량의 범위를 명확히 함

마. 일반수로측량의 신고 등(안 제15조, 제16조)

1) 일반수로측량량을 하려는 자는 해당 수로측량을 하기 전 10일 전까지 수로측량계획서 및 관련 도면을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수로측량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2) 일반수로측량 신고에 대해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수로측량의 기준·방법 및 현장지도 유무 등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을 신고자에 통지하여 일반수로측량의 정확성 및 신뢰성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함

바.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등(안 제19조, 제20조)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및 해양조사기술자경력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을 명시하여 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사.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 신청 등(안 제23조~제29조)

1) 해양조사·정보업 등록 및 변경, 휴·폐업 신고, 지위승계 신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명시하고,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해양조사·정보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2)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해양조사·정보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함

아. 성능검사 대상 장비 및 유효기간 등(안 제30조~제33조)

성능검사 대상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성능검사의 신청 및 성능검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성능검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자. 해양정보 품질관리의 대상 등(안 제35조)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품질관리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정보 품질관리를 통한 해양정보의 정확도 확보를 제고함

차. 관계 기관의 해양정보 요청 등(안 제36조)

해양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고 요구할 수 있는 해양정보의 내용을 정함으로써 해양조사와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함

카. 해양정보간행물 판매 등(안 제39조~제42조)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대행업자 지정, 관리 및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등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그 밖의 항해서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 나목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지”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서지를 말한다.

제3조(그 밖의 항해용 간행물) 법 제2조제12호 라목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탑재할 목적으로 제작된 디지털 간행물로, 제2조 별표1에 따른 ‘항해용 간행물 목록’에 수록된 간행물(법 제2조제12호가목에 따른 전자해도는 제외한다.)
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공되는 실시간 전자해도
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공되는 항행정보, 조류, 조석 및 해양기상 등 해상안전에 관한 디지털 간행물

제2장 해양조사

제4조(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설치·관리 등)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형상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변동, 멸실, 훼손 등의 상태 파악과 관리를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해양기준점 표지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③ 국립해양조사원장이 관리하는 국가해양기준점 표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다시 설치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표지를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5조(국가해양기준점 표지 설치 등의 고시) ①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설치하거나 이전한 경우 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관보 및 국립해양조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현황 또는 변경내역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해기준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고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이전을 원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신청을 받은 자는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전경비 납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전경비 납부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이전을 원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이전한 자에게 경비를 내야 한다.

④ 제2항의 이전경비 산정기준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해양조사 실시 등의 공고) 법 제11조에 따른 해양조사의 구역, 기간 및 내용은 해당 해양조사를 시작하기 5일 전까지 관보 또는 국립해양조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항행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해양조사의 표준화 기준)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 이외의 해양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국가해양관측망의 출입절차)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가해양관측망에 출입하려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출입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는 경우 출입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국가해양관측망의 보호·안전을 고려하여 출입인원과 출입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출입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출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출입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인명구조 등의 긴급 대응을 위해 국가해양관측망을 출입해야 하는 경우 출입허가를 생략 할 수 있다.

제10조(해양예측정보 생산)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양예측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수온, 염분 등 해양물리특성
2. 해무(海霧) 등 해양기상특성
3. 위성자료를 이용한 해양의 현상변화
4.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예측 정보

제11조(그 밖의 수로측량)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로측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안해역의 해안선, 해저지형, 저조선, 해양시설물 등의 변동에 관한 조사
2. 국제협력에 따른 외국의 관할해역에서의 수로측량
3. 공해·심해저·극지 등 관할해역 외에서의 수로측량
4.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한 항로조사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익을 위하여 해양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수로측량

제12조(해양조사선의 표지) 법 제14조제1항, 법 제19조제3항 및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해양조사에 사용되는 선박의 표지는 별표 4와 같다.

제13조(일반수로측량의 종류별 항목) ① 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종류별로 실시하여야 하는 일반수로측량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어항공사: 해당 공사구역에서의 해안선의 측량, 해저지형 및 수심의 측량, 표층퇴적물의 조사
2. 항로준설(航路浚渫), 해저에서의 흙·모래·광물 등의 채취: 해당 공사구역에서의 해저지형 및 수심의 측량, 표층퇴적물의 조사
3. 바다에 흙, 모래, 준설토(浚渫土) 등을 버리는 행위: 해당 공사구역에서의 해저지형 및 수심의 측량, 표층퇴적물의 조사
4. 매립, 방파제·인공안벽(人工岸壁)의 설치나 철거 등: 해당 공사구역에서의 해안선의 측량, 해저지형 및 수심의 측량
5. 인공어초(人工魚礎) 등 수중구조물의 설치 또는 투입: 해당 공사구역에서의 해저지형 및 수심의 측량
6. 교량의 설치 또는 변경: 해당 교량의 교각 위치의 조사(교각을 철거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철거 후 수심의 측량), 해당 교량 밑을 선박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최저 높이 조사
7. 공중 전선 등의 해상구조물의 설치 또는 변경: 해당 공중 전선을 지탱하고 있는 지주(支柱)의 높이 및 위치 조사, 해당 공중 전선 및 구조물 밑을 선박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최저 높이 조사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해당 공사등의 범위와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로조사의 세부항목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일반수로측량의 실시 등) 영 제9조제1호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심 30미터 미만의 해역”과 제2호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심 30미터 이상의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의 수상구역에 해당하는 해역
2.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에 해당하는 해역
3.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어항구역에 해당하는 해역
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로

제15조(일반수로측량의 신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일반수로측량을 하려는 자는 해당 수로측량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의 신고서와 수로측량 계획서 및 관련 도면을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일반수로측량의 기술지도) 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5조에 따라 일반수로측량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수로측량의 기준·방법 및 현장지도 유무 등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을 일반수로측량의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현장지도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현장지도를 하는 자는 해당 수로측량이 부정확하게 진행되는 것을 발견하는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그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방법과 세부 사항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해양정보 사본의 제출 및 심사)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정보의 사본을 제출하고 일반수로측량 성과의 적합성을 심사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8호 서식의 수수료 내역서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해양정보의 사본에 대하여 보완 또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보완 또는 확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수로측량 성과의 적합성 심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일반수로측량 적합성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고 이를 심사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일반수로측량 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해양지명의 제정·변경 신청)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신청서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절차, 심사 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해양조사기술자, 해양조사·정보업 및 해양조사장비

제19조(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해양조사기술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해양조사기술자 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해양조사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처의 퇴직 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1.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자 경력확인서[사용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첨부한다)
3. 졸업증명서(해당자만 첨부한다)
4. 사진(3×4센티미터) 1장(경력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③ 협회는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해양조사기술경력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해양조사기술자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을 발급, 갱신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해양조사기술경력증 발급(신규·갱신·재발급)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은 별지 제17호 서식의 해양조사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18호 서식의 해양조사기술자 보유증명서에 따른다.

⑥ 협회는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을 발급, 갱신 또는 재발급하거나 해양조사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해양조사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⑦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⑧ 해양조사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 등)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의 업무정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1년

2.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1년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횡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2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4분의 1 경감

2. 해당 위반행위가 과실 또는 상당한 이유에 의한 것으로서 보완이 가능한 경우: 4분의 1 경감

3. 제1호와 제2호 모두에 해당할 경우: 2분의 1 경감

제21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 기술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제22조(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 대행) ①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이 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전문교육기관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교육기관은 교육·훈련을 받은 해양조사기술자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이를 협회에 통지하여 법 제26조제

3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경력증에 교육 이수 사항을 기록·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문교육기관은 해양조사기술자로부터 받는 교육비 명세를 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1월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7조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보유하고 있는 해양조사기술자의 명단

나. 가목의 인력에 대한 해양조사기술경력증 사본(단, 해양정보서비스업의 경우 교육수료증)

2. 영 제17조에 따른 장비를 갖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가목의 장비 성능검사서 사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17조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을 위반한 경우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신청이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해양조사·정보업자의 변경 신고 등) ① 법 제30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해양조사·정보업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해양조사·정보업 등록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양조사·정보업용 장비 변경의 경우

가. 변경된 장비의 명세서, 관련 사진

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변경된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가. 입사 또는 퇴사한 기술자의 명단

나. 입사한 기술인력의 해양조사기술경력증명서(단, 해양정보 서비스업의 경우 교육수료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중 사업자등록증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업장소 변경의 경우: 변경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상호 변경의 경우: 변경사항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변경의 경우: 변경사항이 기재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의 경우: 변경사항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

제25조(해양조사·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등의 서식)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정보업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증과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

른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수첩을 발급하고, 그 사실은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 등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영 제19조에 따라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증 또는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 서식을 작성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해양조사·정보업의 휴·폐업 신고) ① 법 제34조에 따라 해양조사·정보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4조제1호에 따라 해산한 해양조사·정보업자인 법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해양조사·정보업을 폐업하려는 자: 별지 제28호 서식의 해양조사·정보업 폐업신고서, 해양조사·정보업등록증 및 해양조사·정보업등록수첩

2. 법 제34조제3호에 따라 해양조사·정보업을 휴업하려는 자: 별지 제29호 서식의 해양조사·정보업 휴업신고서,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증 및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수첩

3. 법 제34조제3호에 따라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하려는 자: 별지 제30호 서식의 해양조사·정보업 재개신고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해양조사·정보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① 법 제35조에 따라 해양조사·정보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서에 해당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고서와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양조사·정보업 양도·양수 신고의 경우: 별지 제31호 서식

가.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나. 영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2. 해양조사·정보업 상속 신고의 경우: 별지 제32호 서식

가.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영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3. 해양조사·정보업 법인 합병 신고의 경우: 별지 제33호 서식

가. 합병계약서 사본

나. 합병공고문

다.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라. 영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상속신고서는 제외한다)를 제출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해양조사·정보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30조(성능검사 대상 장비 및 유효기간) ① 법 제41조제1항 본문의 “해양조사장비를 사용하는 자”란 법 제30조에 따라 해양조사·정보업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양조사장비와 유효기간은 별표 6과 같다.

제31조(성능검사 제외 장비)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서 “「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검정·교정을 받은 해양조사장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조사장비”란 다음 각 호의 해양조사장비 중 제33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인정한 해양조사장비를 말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서 발행한 검·교정 성적증명서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한 해양조사장비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은 측량기기
3. 그 외 국내외 공인기관, 장비 제조사 등에서 발행한 검교정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해양조사장비

제32조(성능검사 절차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 서식의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신청서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당 해양조사장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가 완료된 경우, 별지 제35호 서식의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서에 검사결과를 판정하여 산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6호 서식의 검사필증을 발급하고, 신청인은 검사필증을 해당 장비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31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인정한 해양조사장비는 성능검사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검·교정 성적증명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유효기간을 기산하여 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2호의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3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검사필증을 해양조사장비에 대한 검사필증으로 본다.

제33조(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기준 등)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기준은 별표 7과 같으며, 그 외 방법 및 절차 등 검사 수행 세부 사항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성능검사를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해양조사장비는 해양조사에 사용하여서

는 아니된다.

1.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제30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해양조사장비(제30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 대상 장비에 포함되지 않은 장비는 제외한다)
2. 제32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해양조사장비

제4장 해양정보의 활용

제34조(해양정보의 공표 및 열람)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해양정보간행물에 수록
2.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에 게시
3. 방송·통신매체를 통한 발표

②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 서식의 해양정보의 사본 발급 신청서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해양정보 품질관리의 대상 등)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대상 및 범위는 각호와 같다.

1. 법 제14조에 따라 시행한 해양관측 성과
2. 법 제17조에 따라 시행한 해양예측시스템 운영 성과
3. 법 제19조에 따라 시행한 기본수로측량 성과

4. 법 제47조에 따라 제작한 해양정보간행물 중 항해용 간행물

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관계 기관의 해양정보 요청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 계획이나 해양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관계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6.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수업부설연구소

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9.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을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해양조사 계획이나 해양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의 목적 · 위치 · 기간
2. 조사방법 및 조사장비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4. 취득 데이터
5. 최종 결과물

제37조(항행통보 · 경보의 제공절차 및 방법) ① 법 제47조제5항 항행통보는 1주일에 한 번 국문과 영문으로 발행한다.

② 항행통보는 우편 또는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③ 항행통보를 수령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항행통보 신청서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 신청)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 복제 · 유사제작물 발행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 서식의 해양정보간행물 복제 · 유사제작물 발행 승인신청서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해양정보간행물 판매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를 대행할 자(이하 “판매대행업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 서식의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판매방식, 항행통보 반영계획, 이용자 지원방안 등 포함)
2.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설비 구입을 증명하는 영수증 등 관련 서류(수치제작물의 대행업자만 해당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영 제24조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1호 서식의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0조(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관리 등) 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를 지정한 경우 대행의 목적, 수수료, 대행업자의 의무, 계약 위반시 조치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법 제50조의 판매 대행업자를 지휘·감독하며,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판매대행업자와의 계약, 지휘·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판매대행업자의 변경사항 신고) ①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42호 서식의 판매대행업자 등록변경신고서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중 사업자등록증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상호,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변경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2. 법인이 파산 또는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경우: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 지정서

3. 폐업한 경우: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 지정서

제42조(판매대행업자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5장 보칙

제43조(현지조사자의 증표)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3호 서식과 같다.

제44조(수수료의 납부) ①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 산정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법 제5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0과 같다.

③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에 따른 수수료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해양정보의 사본발급 및 제7호에 해양정보간행물의 복제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이 고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협회에 위탁된 업무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제45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59조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4호 서식에 따른 업무 위탁 청약서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부
2. 사업지역 도면 2부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는 경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46조(협회에 대한 업무의 위탁) ① 영 제29조제2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등표(燈標), 돌핀 등에 설치된 해양관측시설 중 국립해양조사원장이 관리하는 관측시설의 관리
2. 해양관측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이 협회에 설치한 전산시스템의 관리
3. 그 밖에 접근성, 난이도 등 관리 여건과 협회의 기술 보유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의뢰하는 관측시설의 관리

② 영 제29조제2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물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4조에 따라 시행하는 해양관측성과의 품질관리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기본수로측량의 품질관리
3. 법 제47조에 따라 제작하는 해양정보간행물 중 항해용 간행물의 품질관리

③ 영 제29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물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항해용 간행물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2장의 제목 “측량 및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한다.

제2장제5절(제29조부터 제4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7절의 제목 “측량업 및 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수로·토지이동조사”를 각각 “토지이동조사”로 한다.

제112조제1항 및 제3항 중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을 각각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한다.

제113조를 삭제한다.

제11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국토지리정보원장, 국립해양조사원장”을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한다.

②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조사 업무

③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2조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도(海圖) 및 조석표(潮汐表) 등 항해용 간행물”이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가목에 따른 해도,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항로지, 조석표, 등대표 및 같은 조 다목에 따른 항행통보를 말한다.

④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나 같은 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로, “수로측량업이나 해양관측업”을 “해양조사·정보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전단 중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직각좌표값을 기재한다”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삼각점”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으로 한다.

제46조제1호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 중 삼각점표지”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 기준점의 수로측량기준점의 표시”로 한다.

⑤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다목”으로 한다.

⑥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나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그 밖의 항해서지의 종류(제2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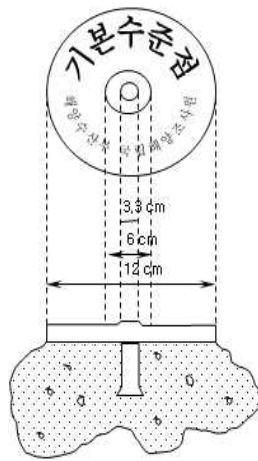
1. 조류표
2. 조류도
3. 해상거리표
4. 천측력
5. 해도도식
6. 항해용간행물 목록

[별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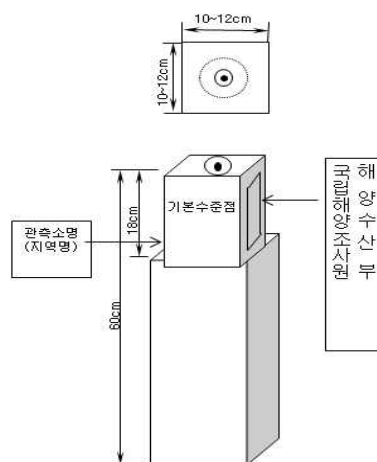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형상 및 규격(제4조제1항 관련)

1. 기본수준점 표지(단위: 센티미터)

1) 동판제(銅版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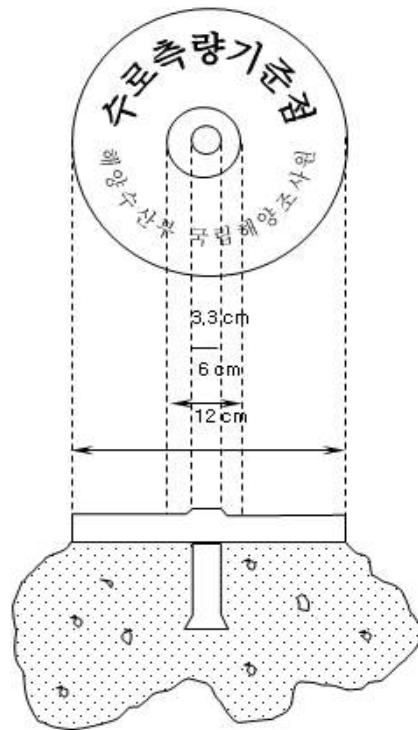


2) 주석제(柱石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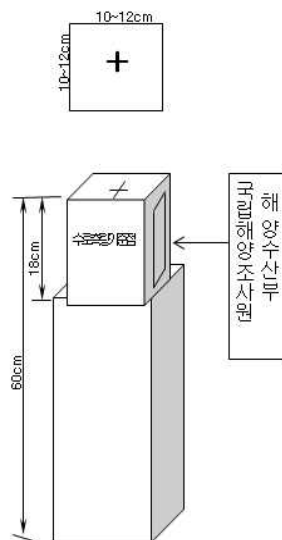


2. 수로측량기준점 표지(단위: 센티미터)

1) 동판제(銅版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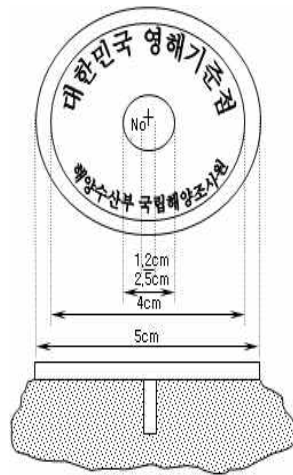


2) 주석제(柱石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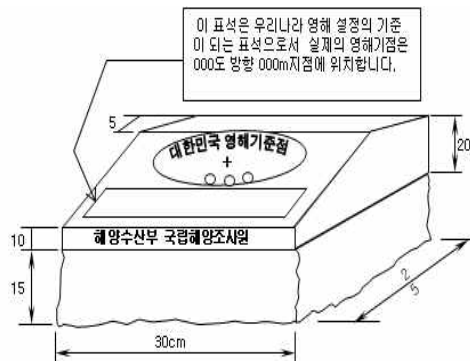


3. 영해기준점 표지(단위: 센티미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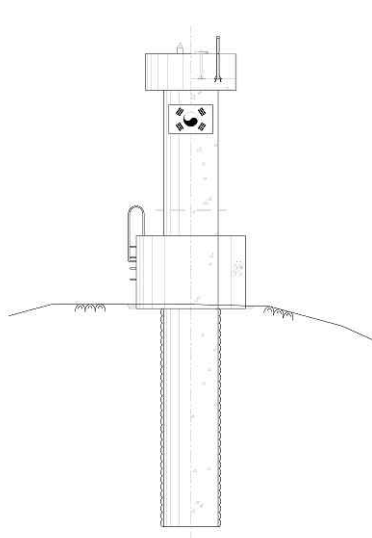
1) 동판제(銅版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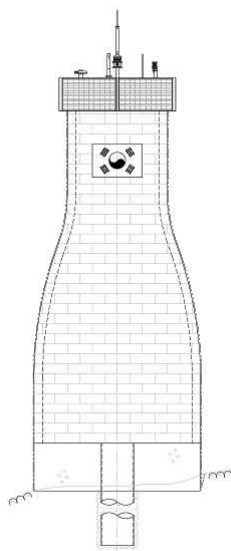
2) 주석제(柱石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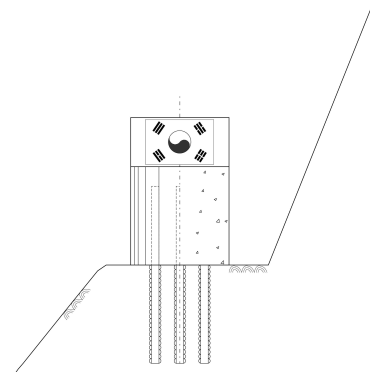
3) 구조물(현장에 따라 설치 규모 조정)



(모노파일형)



(침성대형)



(표석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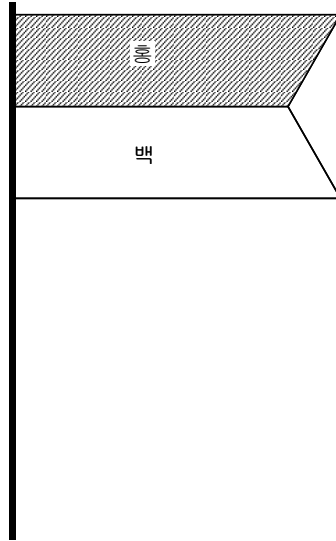
[별표 3]

해양조사 항목별 표준과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항목		자료표준		조사기준
		단위	최소 자리수	
해양 기준점	수평위치	도-분-초	0.0001초	세계측지계(WGS84)
	수직높이	센티미터(cm)	0.1	기본수준면
조석	조 위	센티미터(cm)	1	기본수준면
해수 유동	유 향	도(°)	1	북(N) 기준, 해수흐름의 진행방향
	유 속	초당센티미터(cm/s)	0.1	-
파랑	파 고	미터(m)	0.1	-
	파 향	도(°)	1	북(N) 기준, 파가 진행해 오는 방향
	파주기	초(s)	0.1	-
해수의 물리적 특성	수 온	섭씨(°C)	0.1	-
	염 분	PSU	0.01	-
	비 중	-	0.0001	-
해양 기상	기 온	섭씨(°C)	0.1	-
	기 압	헥토파스칼(hPa)	0.1	-
	습 도	백분율(%)	1	-
	시 정	미터(m)	1	-
	풍 향	도(°)	1	북(N) 기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풍 속	초당미터(m/s)	0.1	-
수심	50미터 미만	미터(m)	0.1	기본수준면
	50~200미터	미터(m)	0.5	기본수준면
	200미터 이상	미터(m)	1	기본수준면
높이	타원체고	미터(m)	0.1	세계측지계(WGS84)
	간출암	미터(m)	0.1	기본수준면
	육상지형	미터(m)	0.1	평균해면
	노출암/등고	미터(m)	0.1	평균해면
	교량/가공선	미터(m)	0.1	약최고고조면
해안선길이		미터(m)	1	약최고고조면
해상지자기		나노테슬라(nT)	0.1	-
중력		밀리갈(mGal)	0.1	-
저질입경		파이(φ)	1	입자직경

[별표 4]

해양조사선의 표지(제12조 관련)



[별표 5]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공중에 미치는 피해의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해 당 법 조 문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고의로 해양조사,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또는 해양정보 제공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과실로 해양조사,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또는 해양정보 제공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1호	영업정지 4개월	등록취소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2호	등록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마.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4호	등록취소		
바. 법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사. 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6호	등록취소		
아.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증 또는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해양조사·정보업을 하게 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7호	등록취소		
자.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8호	등록취소		
차.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9호	등록취소		
카.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9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별표 6]

성능검사 대상 장비 및 유효기간(제30조제2항 관련)

성능검사 대상 장비	성능검사 유효기간(년) (성능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
조위계(압력식)	2
유속계(도플러식)	2
단일빔 음향측심기	3
다중빔 음향측심기	3

비 고

1. 해양조사선의 선저에 고정·장착되어 선박상가 이외의 방법으로 탈부착이 불가능한 해양조사장비의 경우에는 성능검사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다만, 음향측심기의 경우 해상의 지정 검사구역에서 calibration 후 실시한 측심자료 등을 해도상의 수심과 비교한 결과를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성능검사를 대체한다.
2. 성능검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여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별표 7]

성능검사 기준(제33조 관련)

항 목		성능 적합 기준	비고
음향 측심기	다중빔 음향 측심기	거리 : ±10cm 이내 (평균 및 표준편차)	수평 4단계(10m, 20m, 30m, 40m) 검사
		탐지비율 40%미만 : 미흡 탐지비율 40 ~ 70%: 보통 탐지비율 70%이상 : 양호 (40% 이상 적합 처리)	수평 4단계(10m, 20m, 30m, 40m) 검사
	단일빔 음향 측심기	거리 : ±10cm 이내 (평균 및 표준편차)	수평 4단계(10m, 20m, 30m, 40m) 검사
항 목		성능 적합 기준	비고
유속계		유속 : ±5% 이내 유향 : ±10° 이내	2m/s 기준의 평균 유속 및 평균 유향차
항 목		성능 적합 기준	비고
조위계 (압력식)	안정도		수면 하 5~7m 중 고정수심에서 60분간 수심측정
	최대 측정가능 범위의 0.08% 이내의 수심 표준편차		
	정확도		수면 하 1, 3, 5, 7, 9m(왕복) 총 9단계 20분씩 수심측정
	최대 측정가능 범위의 0.08% 이내의 수심 표준편차		
	배율 및 상관도		수심 변화량의 기울기(배율)와 상관 관계 분석에 의한 피어슨 상관계수(r)를 구함
	배율 : 0.99~1.01 상관계수 : 0.99~1.00		

[별표 8]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42조 관련)

1. 일반 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가중하되,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공중(公衆)에 미치는 피해의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 기준

위 반 사 항	해당 법조문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제5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항해용 간행물을 최신 항행통보에 따라 수정하지 아니하고 보급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3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6개월	지정취소
마. 지정을 받은 판매대행업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5호	지정취소		

[별표 9]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 산정방법(제44조제1항 관련)

○ 적합성 심사의 수수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수수료} = \text{인건비} + \text{제경비} + \text{기술료} + \text{여비}$

가. 인건비 = [(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항목별 인원수) × (노임단가)]

- 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항목별 인원수는 국립해양조사원이 정하여 고시한다.
- 노임단가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 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공표하는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한다.

나. 제경비는 인건비의 110~120%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다.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라.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별표 10]

업무 종류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제44조제2항 관련)

해당 업무	단위	수수료	해당 법조문
1. 해양조사 기술경력증 발급 신청	1건당	3,000원	법 제58조제1항 제2호
2. 해양조사·정보업 등록 신청	1건당	20,000원	법 제58조제1항 제3호
3.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증 또는 해양 조사·정보업 등록수첩의 발급 신 청	1건당	2,000원	법 제58조제1항 제4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설치·이전에 대한 고시 (제5조 관련)

국립해양조사원 고시 제0000-00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설치·이전 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년 월 일
국립해양조사원장

1. 기준점 종류 :
2. 해양조사 방법 :
3. 해양조사자 :
4. 해양조사 기간 : 000.00.00. ~ 0000.00.00.
5. 해양조사성과의 보관장소 :
6. 내역서

(기본수준점 예시)

명칭 (소재지)	표지 번호	위 치(WGS-84)			표지 형태	표 고(cm)		설치 일자 (년월)	비고
		위도(N)	경도(E)	타원체고 (m)		MSL상	DL상		
영도 (부산영도)	No.1	00-00-00.0	000-00-00.0	0.00	동 판 또는 주 석	000.0	000.0	00.00	신설 폐지

(수로측량기준점 예시)

명 칭		위 치(WGS-84)			표지 형태	설치일자 (년월)	비고
		위도(N)	경도(E)	타원체고(m)			
부산항	No.1	00-00-00.000	000-00-00.000	0.00	동 판	0000.00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이전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대표자		업체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신청내용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종류, 명칭 및 번호			
	설치 장소			
	이전 사유			
	이전 희망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이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첨부서류	설치 이전위치 현장사진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신청인	→	접수 및 검토 국립해양조사원	→	이전 위탁 국립해양조사원	→	이 전 업무위탁기관	→	이전결과 보고 업무위탁기관	→	확 인 국립해양조사원	→	통 보 국립해양조사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국가해양관측망 출입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대 상	구 분	조위관측소[] 해수유동관측소[] 해양관측소[] 종합해양과학기지[] 해양관측부이[] 기타[]		명 칭		
출 입 허 가 신 청	출입 목적					
	출입 기간					
	이용 시설					
	지원 사항					
출 입 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해양관측망의 출입에 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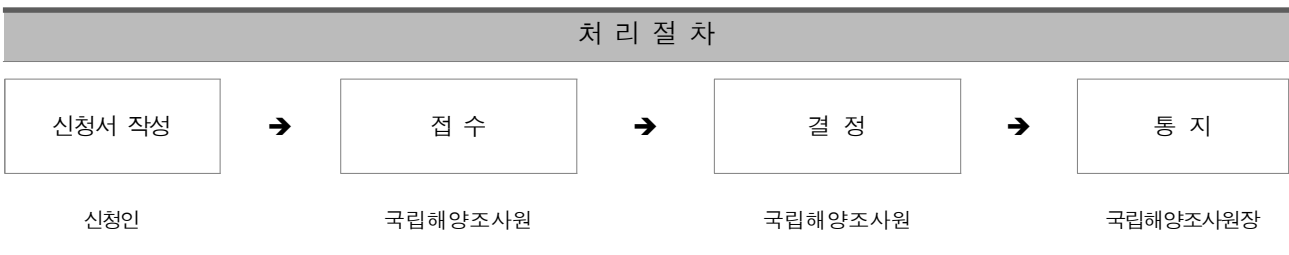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관측망을 출입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국가해양관측망 출입허가서

허가번호:		호		
허가받는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대상	구 분		명 칭	
허가 사항	출입목적			
	출입기간			
	이용시설			
	출입인원			
허가 조건	신청인에게 출입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과 출입자의 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국립해양조사원장 적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일반수로측량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4일
계획기관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시행기관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조사내용	목적			
	구역			
	기간			
	기준점			
	방법			
	성과종류 및 내용			
	조사요원의 현황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신고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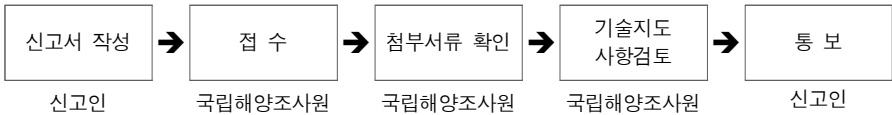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첨부서류	수로측량 계획서 및 관련도면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일반수로측량 적합성 심사 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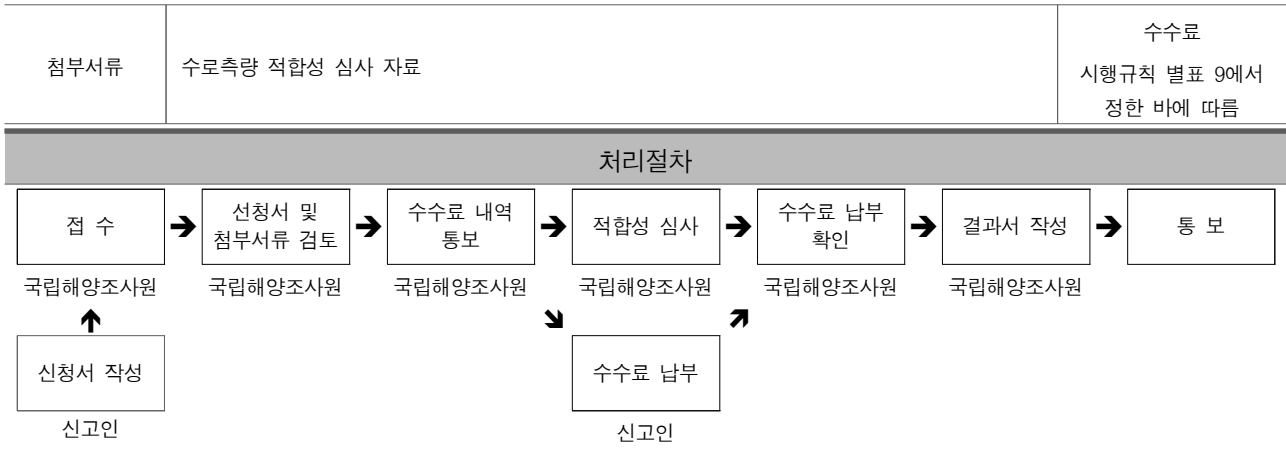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법인 또는 기관명		
	대표자(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심사대상	수로조사의 종류		
	수로조사의 내용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로측량 적합성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일반수로측량 적합성심사 수수료 내역서

심 사 내 용				단위	총수량	심사량	단 가	금 액	비 고		
원도심사				도엽							
기준점 측량	GNSS 등 측량			점							
	수준측량			km							
조석관측				식							
조류관측				개소							
저질조사				점							
노·간출암조사				군소							
수심 측량	단 범	1/10,000	피치 100m	km							
			피치 75m								
			피치 50m								
			피치 25m								
			피치 10m								
			피치 5m								
		1/5,000	피치 100m								
			피치 75m								
			피치 50m								
			피치 25m								
			피치 10m								
			피치 5m								
		1/2,500	피치 100m								
			피치 75m								
			피치 50m								
			피치 25m								
			피치 10m								
			피치 5m								
	다 중 범	1/10,000	피치 100m								
			피치 75m								
			피치 50m								
		1/5,000	피치 25m								
			1/2,500		피치 10m						
					피치 5m						
수중지층탐사 해저면영상조사 중력·지자기조사		1/10,000	km								
		1/5,000									
		1/2,500									
1. 소 계											
2. 제경비 : (1×110%)											
3. 기술료 : (1+2)×20%											
4. 직접경비 (여비)											
계 : (1+ 2+ 3+ 4)											
5. 부 가 세 (10%)											
합 계											
작성년월일				년 월 일							

일반수로측량 적합성 심사 결과서

일반수로측량 적합성 심사 결과서				
신청인	① 법인 또는 기관명			
	② 대표자 (성명)		③사업자 등록번호	
	④ 주소	(전화번호 :)		
⑤사업명				
⑥심사승인번호		제 - 호(년 월 일)		
⑦수로측량지역				
⑧수로측량계획기관				
⑨수로측량작업기관				
⑩수로측량기간				
⑪심사내용				
⑫심사종합판정내용				
⑬심사기간				
⑭심사자				
⑮심사종합평가자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에 따라 해양정보 사본 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기관장 직인				
※ 구비서류: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60g/m²)

해양지명의 제정·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전화			휴대전화		
	주소								
신청 종류	[] 제정		[] 변경		[] 삭제		[] 그 밖의 사유		
신청대상	국문 1안)				2안)				
해양지명	영문 1안)				2안)				
신청사유									
지명 종류				특징					
지명 소재지									
좌표/위치									

해도, 사진, 그림, 도표 등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양지명의 제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6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국립해양조사원장

신 청 서 작 성

접 수

검 토

심 의

고 시

해양조사기술자 경력신고서
(○○분야)

※ 작성방법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인적사항	성명	(한글)			생년월일		사진 (3×4센티미터)	
		(한자)						
		(영문)						
	거주지							
학력	기간			학교 및 학과명			학위	
근무처 이력	근무기간	회사명	업종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근무기간	회사명	업종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				~			
	~				~			
	~				~			
	~				~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갱신연월일	
교육훈련	교육기간		교육과정		수료번호		교육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훈	연월일		종류		시행청		근거	

210mm×297mm(일반용지60g/㎡)

(뒤 쪽)

연번	참여기간	근무처명	참여사업명	직위	담당업무	발주자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 붙임의 연번 7번에서 번까지 포함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본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합니다) 3. 졸업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합니다) 4. 사진(3×4센티미터) 1장(경력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모두 한글로 적으십시오(성명은 예외).
- 이 신청서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참여기간: 참여한 기간을 연, 월, 일로 표시
 - 근무처이력: 지금까지 근무하였던 회사명과 업종을 기재
 - 참여사업명: 참여한 공사, 설계 및 용역명(도급계약서 사본 제출), 본사 근무 시에는 부서명을 기재
 - 직 위: 해당 사업 참여 당시 회사에서의 직위를 기재
 - 담당업무: 해당 사업 참여 시 담당한 업무를 계획·설계·설계감리·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안전진단·유지관리·사업관리·유지관리·사업관리·연구업무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발 주 자: 해당 사업을 발주한 기관명을 기재

해양조사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
(○○분야)

※ 작성방법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거주지	

소속회사 변경

현재 소속회사	회사명	입사일
	업종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전 소속회사	회사명	업종
	입사일	퇴사일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기술경력 변경

참여기간	근무처명	참여사업명	직위	담당업무	발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
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본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모두 한글로 적으십시오(성명은 예외).
- 본 신청서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참여기간: 참여한 기간을 연, 월, 일로 표시
 - 근무처이력: 지금까지 근무하였던 회사명과 업종을 기재
 - 참여사업명: 참여한 공사, 설계 및 용역명(도급계약서 사본 제출), 본사 근무 시에는 부서명을 기재
 - 직 위: 해당사업 참여당시 회사에서의 직위를 기재
 - 담당업무: 해당사업 참여 시 담당한 업무를 계획·설계·설계감리·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안전진단·유지관리·사업관리
·연구업무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발주자 : 해당 사업을 발주한 기관명을 기재

해양조사기술자 경력확인서

※ 작성방법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인적사항	성명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근무처 경력			
소속회사	회사명		
	업종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입사일	퇴사일	

기술경력							
연번	참여기간	참여사업명	발주자	기술구분	전문분야	담당업무	직위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조사기술자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 인

작성방법
1. 기술경력의 작성요령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해양조사기술자 경력신고서의 작성요령과 동일하며, 기술구분과 전문분야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하는 분야를 적습니다.
2. 해양조사기술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입사일”과 “퇴사일”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으시면 됩니다.

210mm × 297mm(일반용지60g/㎡)

기술경력

연번	참여기간	참여사업명	발주자	기술구분	전문분야	담당업무	직위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30	· ~						
31	· ~						
32	· ~						
33	· ~						

(1 쪽)

해양조사기술경력증

발급기관명

140mm×180mm[백상지(150g/㎡)]

유 의 사 항

1.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은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하여야 합니다.
2.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은 양도·양수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3. 해양조사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해양조사기술경력증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속히 갱신하거나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5. “경력사항” 기재 시 이중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발급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현 주 소:

사 진

(3.5cm × 4.5
cm)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협회장 인

▶ 기술등급

[illegible]

140mm×180mm[백상지(150g/m²)]

▶ 기 술 자 격

종 목 및 등 급	합 격 일	등 록 번 호

▶ 학 력

기 간	학 교 명	학 과 (전 공)	학 위

140mm×180mm[백상지(150g/㎡)]

– 66 –

해양조사기술경력증 발급대장

(해양관측, 수로측량, 해도제작, 해양정보서비스 분야)

[illegible]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

해양조사 기술경력증 발급 ☐ 신규 ☐ 갱신 ☐ 재발급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근무처	회사명		업종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 분야	분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제4항에 따라 해양 조사기술경력증의 발급·갱신·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의
의
의

신청인 (본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해양조사기술자 경력증명서

회원번호										No.	-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기술 등급	구분		전문분야			부실벌점					
기술 자격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종목 및 등급		합격 일	등록번호		
학 력	졸업일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교육 훈련	기간		과정명					교육기관명			
상 훈	연월일	종류 및 근거		상훈기관		연월일	종류 및 근거		상훈기관		
제 재	연월일	종류		근거				제재기관			
근 무 처 경 력	근무기간		회사명		근무기간		회사명		근무기간		회사명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주요 경력				
참여기간 (참여일)	사업명	구분	담당업무	비고
	발주자	전문분야	직위	
~				
~				
~				
~				
~				
~				
~				
~				
~				

위와 같이 해양조사기술자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협회장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해양조사기술자 보유증명서

(회사명 : 업종 :)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직위	기술자격			분야 및 기술등급	교육훈련	
					자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기간	과정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해양조사기술자 보유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협회장 인

297mm×210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해양조사기술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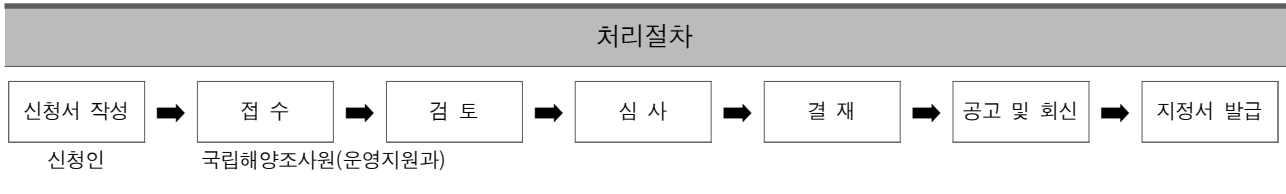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조사기술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교육 인력·시설·설비의 확보 현황 1부 2. 교육계획서 및 교육평가계획서 각 1부 3.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1부 4. 교육규정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지정번호 제 호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 명칭:
- 소재지:
- 대표자:
- 지정조건: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 법인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립해양조사원장

직인

제 호

교육수료증

성명:

생년월일:

소속:

교육과정:

교육종류:

교육이수등급:

직무분야:

교육기간: . . . ~ . . . (시간)

위 사람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전문교육기관의 장

직인

해양조사 · 정보업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신청사항	상호		업종	
	전화번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업무형태	[]수로측량업 []해양관측업 []해도제작업 []해양정보서비스업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규정된 업무구분에 따라 √ 표 하십시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해양조사 · 정보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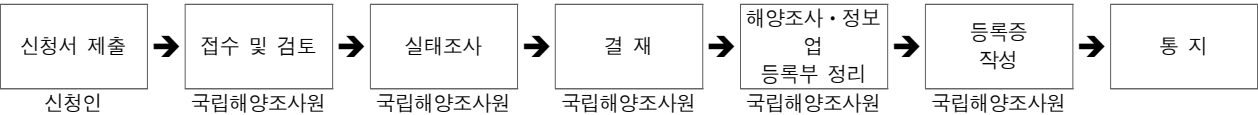
신청인 제출서류	1. 해양조사 · 정보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또는 교육수료증)	수수료 20,0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 32조에 따른 결격사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해양조사·정보업 등록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내용	상호	등록번호		
		등록일		
변경내용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국립해양조사원장 확인사항	
영업장소 변경의 경우	없음	변경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상호 변경의 경우	없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대표자(법인)의 경우	없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장비 변경의 경우	1. 변경된 장비의 명세서, 관련 사진 2. 소유권 또는 임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보유 기술자 변경의 경우	1. 입사하거나 퇴사한 기술자의 명단 2. 입사한 해양조사기술자의 경력증명서(또는 해양조사기술자 교육이수증)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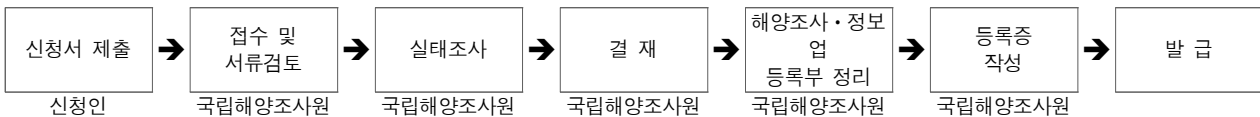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60g/㎡)

등록번호 제 호

해 양 조 사 · 정 보 업 등 록 증

1. 상 호:

2. 등록연월일:

3. 성 명:
(대표자)

사 진
3센티미터×4센
티미터

4. 사업자등록번호:

5. 소 재 지:

6. 업무형태: (수로측량업무, 해양관측업무, 해도제작업무, 해양정보서비스업무)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해양조사·정보업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해양조사원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별지 제25호서식] (1쪽)

해 양 조 사 · 정 보 업 등 록 수 첩 해양조사·정보업 등록기관 로고 해 양 조 사 · 정 보 업 등 록 기 관

80mm×130mm(보존용지(1종) 120g/m²)

(2쪽)

등록번호 제 호			
해 양 조 사 · 정 보 업 등 록 수 첩			
상호 및 명칭		사진 (3×4센티미터)	
업종			
등록연월일			
성 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지점 소재지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국립해양조사원장인			

변동사항 (3쪽)

1	변경일자	. . .	확인
	변경구분		
	신고일자	. . .	
	변경내용		
2	변경일자	. . .	확인
	변경구분		
	신고일자	. . .	
	변경내용		
3	변경일자	. . .	확인
	변경구분		
	신고일자	. . .	
	변경내용		
4	변경일자	. . .	확인
	변경구분		
	신고일자	. . .	
	변경내용		

해양조사·정보업 등록부			기록자	담당
①업무형태	수로측량업무, 해양관측업무, 해도제작업무, 해양정보서비스업무	②등록번호		
③상 호		④등록일자		
⑤대표자				
⑥주된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⑦지점소재지				
⑧기재사항변경				
구분 (등록·변경·취소)	변경내용	변경일	신고일	확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해양조사·정보업(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내용	상호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사업종류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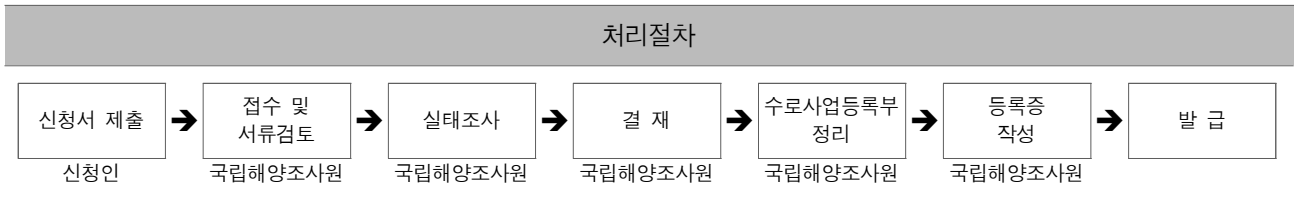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해양조사·정보업(등록증,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첨부서류	잃어버린 경우 : 사유서	수수료 2,000원
------	---------------	---------------



210mm×297mm(일반용지60g/㎡)

해양조사 · 정보업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전자우편주소	
신고내용	업종	등록번호	
	폐업일		
	사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첨부서류	해양조사 · 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유서 제출)	수수료 없음
------	--	-----------

해양조사·정보업 휴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업체명)	업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신고내용	업종	등록번호	
	휴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간)	
	사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휴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첨부서류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유서 제출)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해양조사 · 정보업 재개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업체명)	업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소재지		
신고내용	업종	등록번호	
	업무재개일	년	월 일
	사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업무재개 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해양조사·정보업 양도·양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양도인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업종	해양조사·정보업등록번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양수인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업종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조사·정보업의 양도·양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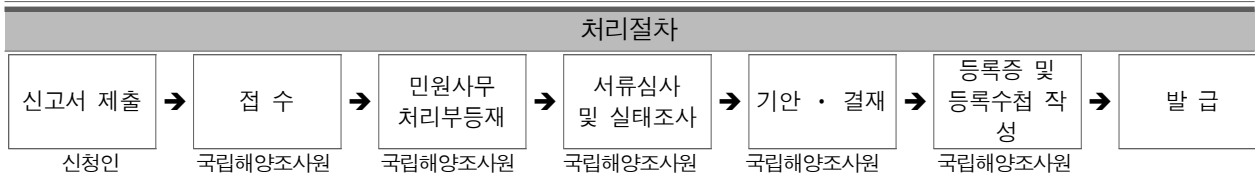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보유하고 있는 해양조사·정보업 기술자의 명단 3. 제2호의 인력에 대한 해양조사·정보업 기술 경력증명서 4.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 및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5.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해양조사·정보업 상속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피상속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망일		
	업종	해양조사·정보업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상속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조사·정보업의 상속을 신고합니다.

이
이
이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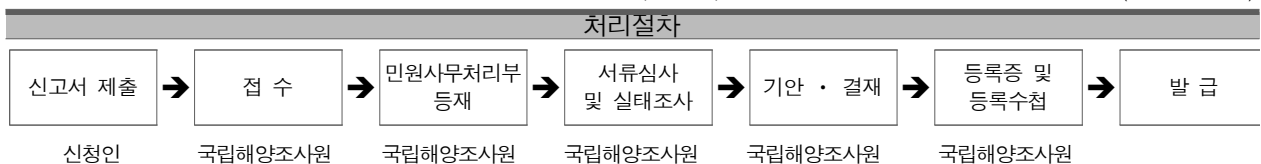
신고인 제출서류	1.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보유하고 있는 해양조사·정보업 기술자의 명단 3. 제2호의 인력에 대한 해양조사·정보업 기술 경력증명서 4.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 및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5.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해양조사·정보업 법인 합병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합병되는 법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합병되는 법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되는 법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양조사·정보업의 법인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인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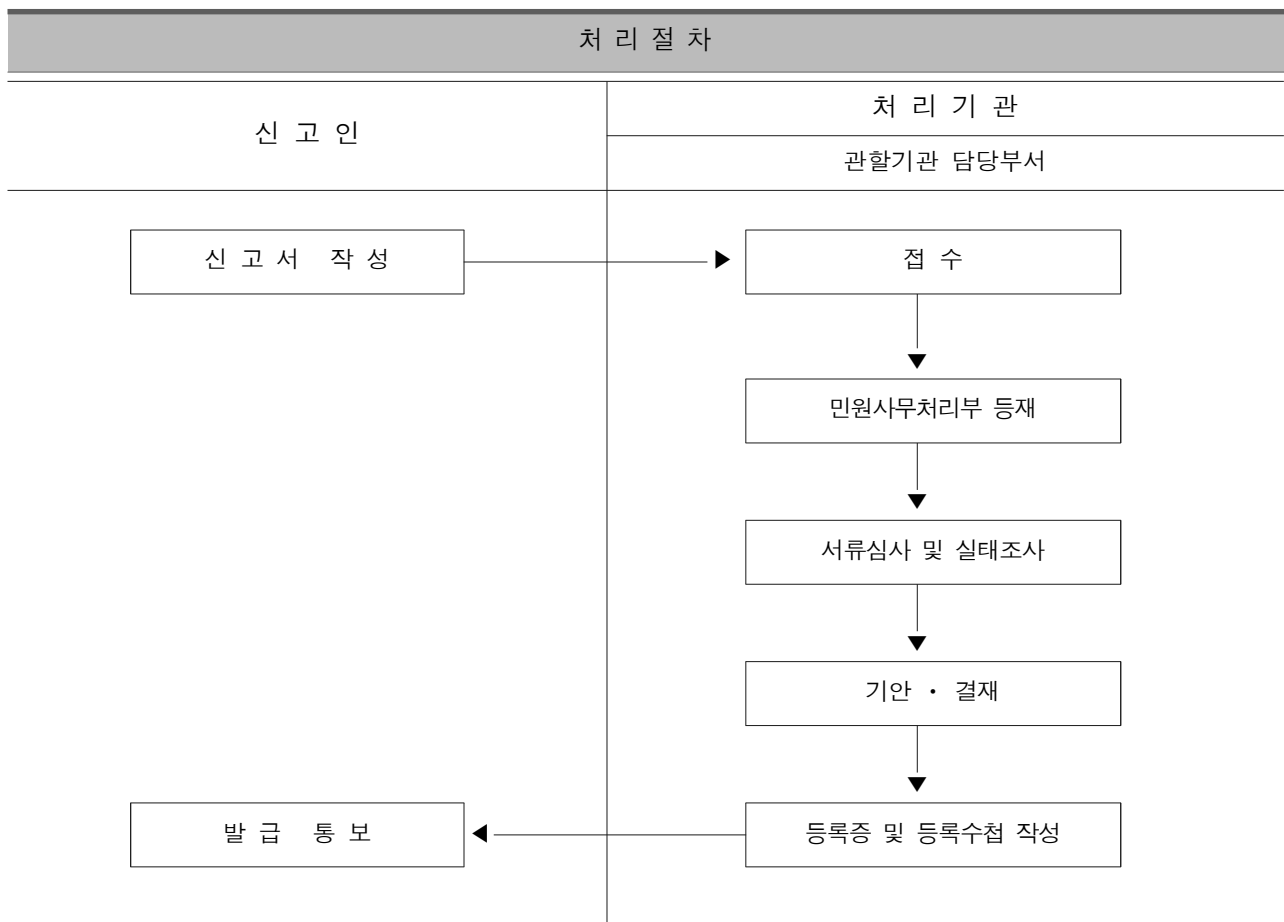
신고인 제출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보유하고 있는 해양조사정보업 기술자의 명단 5. 제4호의 인력에 대한 해양조사정보업 기술 경력증명서 6.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 및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7.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앞쪽) 35일이내 (비고 참조)
신청인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신청 내용	장비명	제조회사	규격(모델)	제조연월일	제조번호(s/n)	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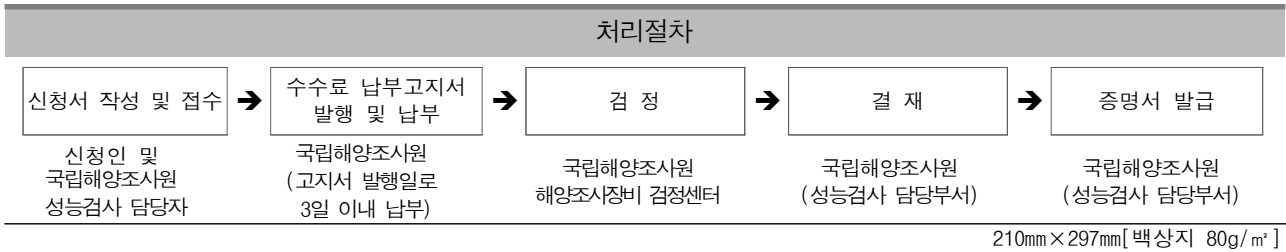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첨부서류	
비고	1. 2대 이상의 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당 15일의 처리기간 및 대당 수수료를 각각 가산합니다. 2. 천재지변이나 그 외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조사장비 검정센터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처리기간(35일)을 3회까지 연장 할 수도 있습니다.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서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등록번호			등록기관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해 양 조 사 장 비 명	규 격 (모 델)	제조번호 (S/N)	제 조 회 사 명	검사결과	
				판 정	검 사 유효기간
특 기 사 항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에 따라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국립해양조사원장 인 붙임: 성능검사 결과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필증(제32조제3항 관련)

②	③	④
검 사 필 (①)		
⑤		

- ①: 검사필증 일련번호
 ②: 장비명 및 제조번호(s/n)
 ③: 검사유효기간
 ④: 장비성능
 ⑤: 성능검사 기관명

<도안요령>

1. 필 증 크 기 : 가로 11.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 직사각형의 형태로 할 것
2. 글 자 체 : 고딕체
3. 글 자 크 기 : 12포인트
4. 글 자 색 : 검은색
5. 바 탕 색 : 하늘색

해양정보 사본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인 또는 기관명(대표자)	전화번호		
	해양조사·정보업 등록번호(해양정보 서비스업자의 경우)			
신청내용	사용목적			
	생산연도 및 기간			
	신청자료종류			
	구역			
	수량			
	단위	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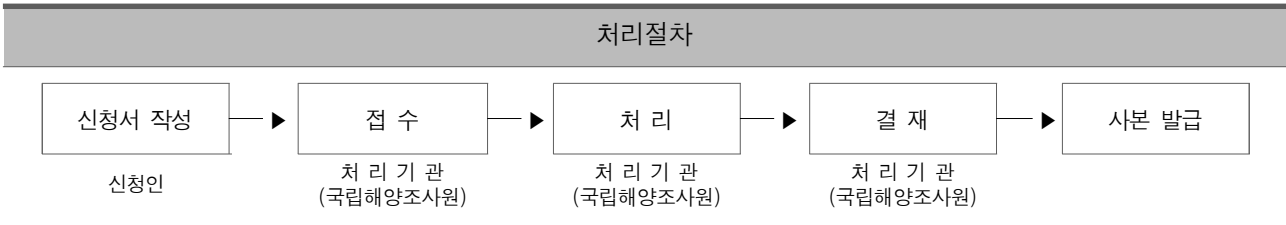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해양정보의 사본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국립해양조사원 장 고시에 따른 수수료 산정기준
------	----	--



항행통보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상호			
	수령지 주소			
항행통보 신청부수	국문			
	영문			
신청사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라 항행통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60g/㎡)

해양정보간행물 복제·유사제작물 발행 승인신청서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e-mail		
	전화번호	FAX		
	주소			
신청내용	용도	① 갱신 정보 필요 유무		
	③ 사용할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복제시)	② 수취제작물 유형		
	③ 복제범위(복제시) []전부 []일부()			
	④ 유사한 간행물의 종류			
	제작시기 []1회 []연속	제작수량		
	제작방법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해양정보간행물 복제·유사제작물 발행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복제 또는 유사제작물 발행에 관한 계획서(신청 내용의 세부사항, 제작물의 견본 혹은 설명서 등)	수수료 국립해양조사원 장 고시에 따른 수수료 산정기준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가.①에는 복제 시 사용할 원본이 수취제작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나.②에는 복제 시 사용할 원본이 수취제작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 ①, ②, ③,은 복제시에만, ④는 유사간행물 제작 신청 시에만 적습니다.

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청의 경우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정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60g/㎡)

제 호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 지정서

1. 법인 또는 기관명:
2. 대 표 자 성 명:
3. 사업자등록번호:
4. 주 소: (전화번호 :)
5. 지정종류: 인쇄물 대행() 수취제작물 대행()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립해양조사원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 등록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내용	상호		등록번호	
			등록일	
변경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해산·폐업	해당사항 [] 해 산 [] 폐 업			
	해산·폐업일			
휴업	휴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간)			
사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frac{1}{\sqrt{2}} \quad \frac{1}{\sqrt{2}} \quad \frac{1}{\sqrt{2}}$$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국립해양조사원장 확인사항
대표자(법인)의 경우	없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상호 변경의 경우	없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없음	변경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보유 기술자 변경의 경우	1. 입사하거나 퇴사한 기술자의 명단 2. 입사한 <u>해양조사기술자의 경력증명서</u>	없음
장비 변경의 경우	1. 변경된 장비의 명세서, 관련 사진 2. 소유권 또는 임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해산·폐업의 경우	<u>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 지정서</u>	

수수로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60g/m²)

(앞쪽)

현 지 조 사 자 증 표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부터

까지

위 사람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3조에 따라 해양조사·정보업자 등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직인

170mm×90mm[백상지(150g/㎡)]

(뒤쪽)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5조(보고 및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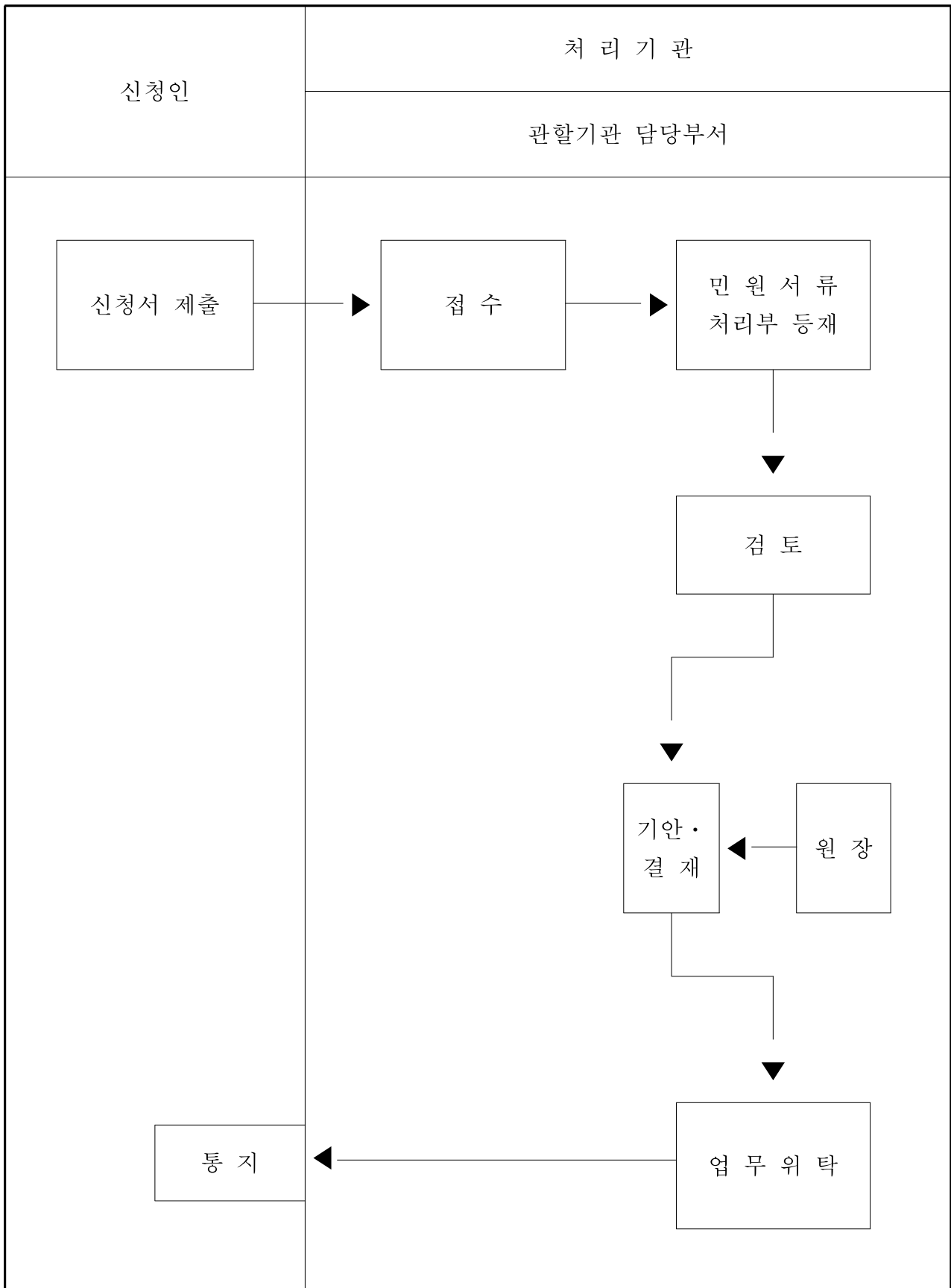
1. 해양조사·정보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양조사,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또는 해양정보의 제공을 부정확하게 하여 민원을 발생하게 한 경우
 2. 해양조사·정보업자가 제3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매대행업자가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업무위탁 청약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사 업 명				
목 적				
지 역 및 범 위				
방법 및 정밀도				
도 면 의 축 척				
작 업 기 간		. . . 부터 . . . 까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라 업무위탁을 청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부 2. 사업지역 도면 2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연 락 처	(044) 200 - 5357